

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
			1개월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기관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	사업내용		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교육감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